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6. 권영숙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2024. 2. 20.
- 다.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2.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문화거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라.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귀하)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권영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법¹⁾」이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의 거리, 문화 예술의 거리, 문화 관광의 거리, 문화 음식의 거리 등의 조례를 제정·운영(광역 1, 기초 43)하고 있음.
- 현재 문화의 거리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서초, 도봉, 강서 3개 구가 있음.

[표 1] 서울시 자치구 조례 및 문화거리 운영 현황

연 번	구 명	조 례 명	거 리 명	구 간
1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음악문화지구 (서리풀 악기거리)	예술의전당 및 악기거리 일대
2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방학천문화예술거리	도봉로143길 10 방학동 일대
3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곡 문화거리	5호선 마곡역 ~ 발산역까지

-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마포구도 전 지역이 지리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지역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처럼 관내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표 2] 마포구 지역문화자원 현황

구 분	현 황
특화거리	홍대 걷고싶은 길, 언트럴파크, 망리단길, 매봉산자락길, 마포음식문화거리, 도화동 상점거리, 용강동 먹자거리, 신수동 은행나무길, 상암DMC 등
재래시장	동진시장,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공덕시장 등
지역축제	홍대 레드로드 페스티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와우북페스티벌, 마포음식문화축제, 신수동바탕골축제 등
자연 및 문화재	경의선숲길공원,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난지캠핑장, 밤섬, 선유도 공원, 절두산성지, 아소정터, 정구중 가옥 입지 등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구가 추진하는 문화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거리 지정,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거리 위원회 구성,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의 위탁 및 지원 등을 규정함.
- 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문화거리”를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함.

- 안 제3조는 구청장이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등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의 거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항 등 문화의 거리 구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거리 안의 주민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 운영·관리 주체로서 참여하게 하였음.
- 안 제9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거리 운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는 문화거리 내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문화 발전,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을 통해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 및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으로 구민들의 편익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문화의 거리 지정, 거리조성 기본계획,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거리 지정 시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 주도 방식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의한 주민 자율적·참여형 사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